

▣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[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[2021.02.17 제목개정] ]

법 제47조의4[ 납부지연가산세[2018.12.31 제목개정] ]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 
 제47조의5[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2 제목개정] ] 제1항 제2호에서  
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**1일 10만분의 25의 율**을 말한다.[2019.02.12 개정]

2019.02.12 개정전	★ 2019.02.12 개정후 ★
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<b>【 납부 · 환급불성실 ·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  (2012.02.02 제목개정) 】</b>	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<b>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  (2019.02.12 제목개정) 】</b>
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 이란 <b>1일 1만분의 3의 율</b> 을 말한다. [2012.02.02 개정]	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<b>1일 10만분의 25의 율</b> 을 말한다. [2019.02.12 개정]

☑ 국세기본법시행령 부칙 [ 2019.02.12 대통령령 제29534호 ]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16조, 제23조[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[2010.02.18 제목개정] ] 제1항,

제27조의4 [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[2021.02.17 제목개정] ][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],

제31조[ 국세환급금의 충당[2018.02.13 제목개정] ] 제1항 · 제2항, 제37조[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[2000.12.29 제목개정] ]

제4항 제1호 및 제43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 【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

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

제27조의4 [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[2019.02.12 제목개정] ]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▣ **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 [ 납부불성실가산세 ·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]**

법 제55조 [ 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9 제목개정] ]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 
제56조[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9 제목개정] ] 제2호의 계산식에서  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 
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. **[2018.12.31 개정]**

2018.12.31 개정전	★ 2018.12.31 개정후 ★
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 【 납부불성실가산세 ·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】	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 【 납부불성실가산세 ·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】
법 제55조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. <b>[2017.12.29 개정]</b>	법 제55조 제1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. <b>[2018.12.31 개정]</b>

☑ **지방세기본법시행령부칙 [ 대통령령 제29436호 ]**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· 환급불성실가산세  
또는  
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